



재해 개요

- 2020.03.05.(목) 10:50경 경기도 OO시 OO구 OO동 일원의 OONA들목 개량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OO건설(주) 소속인 재해자가 램프구간 임목벌채 작업을 하기 위해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도목(수고 약 16m)을 베어 넘기던 중, 인접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부러진 소나무 가지(중량 47kg, 높이 11m)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벌목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지정
 - 벌도작업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나 추후 작업 후 지정되지 않은 임의의 장소로 대피 중 재해 발생.
- 벌목 작업 시 신호방법 미수립
 - 벌목작업시 벌도의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,
 - 당시 작업 상황은 굴삭기 운전원과 재해자만 재해발생 장소에 있고 동료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미상주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음
- 벌목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작성
 - 수목 등의 중량물을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



재해 예방 대책

- 벌목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
 - 벌도 작업 전 수형, 인접목, 지형, 풍향, 풍속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벌도방향을 선정하고 사전에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.
- 벌목 작업 시 신호방법 수립
 -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톱 소음에도 들을 수 있는 경보기, 호각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킨 후 작업하여야 함.
- 벌목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
 - 추락, 낙하, 전도, 협착, 붕괴 등의 재해예방 대책이 포함 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,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하여야 함.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